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 51591호(2023.12.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4~35층 16개동 총 1,9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177세대(일반(기관추천) 196세대, 다자녀가구 196세대, 신혼부부 355세대, 노부모부양 57세대, 생애최초 37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7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다자녀가구용)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660	01	059.9241A	59A	59.9241	21.5091	81.4332	45.0789	126.5121	35.1287	465	46	46	84	13	88	277	188	18
		02	059.9253B	59B	59.9253	22.1639	82.0892	45.0799	127.1691	35.1294	103	10	10	18	3	19	60	43	4
		03	084.9217A	84A	84.9217	29.7864	114.7081	63.8838	178.5919	49.7828	1,051	105	105	189	31	199	629	422	35
		04	084.9243B	84B	84.9243	32.0473	116.9716	63.8859	180.8575	49.7843	204	20	20	36	6	38	120	84	6
		05	084.9274C	84C	84.9274	30.1425	115.0699	63.8882	178.9581	49.7861	157	15	15	28	4	29	91	66	5
합계											1,980	196	196	355	57	373	1,177	803	6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 지정일	
					대지면적	건축비	계	1차	2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59A	101동 1,2,3,6호 102동 1,2,3,6호 103동 1,2,3,6호 104동 1,2,3,6호 107동 1,2호	465	2층	18	132,554	231,446	364,000	10,000	26,400	36,400	36,400	36,400	36,400	36,400	36,400	36,400	109,200
				18	132,554	235,446	368,000	10,000	26,8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110,400
				18	132,554	239,446	372,000	10,000	27,200	37,200	37,200	37,200	37,200	37,200	37,200	37,200	111,600
				18	132,554	243,446	376,000	10,000	27,600	37,600	37,600	37,600	37,600	37,600	37,600	37,600	112,800
				90	132,554	247,446	380,000	10,000	28,000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114,000
				303	132,554	255,446	388,000	10,000	28,800	38,800	38,800	38,800	38,800	38,800	38,800	38,800	116,400
59B	101동 5호 102동 5호 103동 5호 104동 5호	103	2층	4	132,557	221,443	354,000	10,000	25,400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106,200	
				4	132,557	225,443	358,000	10,000	25,800	35,800	35,800	35,800	35,800	35,800	35,800	107,400	
				4	132,557	228,443	361,000	10,000	26,100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108,300	
				4	132,557	232,443	365,000	10,000	26,500	36,500	36,500	36,500	36,500	36,500	36,500	109,500	
				20	132,557	236,443	369,000	10,000	26,9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110,700	
				67	132,557	244,443	377,000	10,000	27,700	37,700	37,700	37,700	37,700	37,700	37,700	113,100	
84A	105동 1,2,5호 106동 1,2,5호 107동 3,5호 108동 1,2,3,5호 109동 1,3호 110동 1,3호 111동 1,2,3호 112동 1,2,3,5호 113동 1,2,3호 114동 1,2,5호 115동 2,5호 116동 1,2,3,5호	1,051	2층	35	187,850	291,150	479,000	10,000	37,900	47,900	47,900	47,900	47,900	47,900	47,900	143,700	
				35	187,850	296,150	484,000	10,000	38,400	48,400	48,400	48,400	48,400	48,400	48,400	145,200	
			4층	35	187,850	307,150	495,000	10,000	39,500	49,500	49,500	49,500	49,500	49,500	49,500	148,500	
				35	187,850	317,150	505,000	10,000	40,500	50,500	50,500	50,500	50,500	50,500	50,500	151,500	
			기존층	911	187,850	339,150	527,000	10,000	42,700	52,700	52,700	52,700	52,700	52,700	52,700	158,100	
84B	105동 3호 106동 3호 109동 2호 110동 2호 114동 3호 115동 3호	204	2층	6	187,856	284,144	472,000	10,000	37,2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141,600	
				6	187,856	289,144	477,000	10,000	37,700	47,700	47,700	47,700	47,700	47,700	143,100		
			4층	6	187,856	299,144	487,000	10,000	38,700	48,700	48,700	48,700	48,700	48,700	48,700	146,100	
				6	187,856	310,144	498,000	10,000	39,800	49,800	49,800	49,800	49,800	49,800	49,800	149,400	
			기존층	180	187,856	331,144	519,000	10,000	41,900	51,900	51,900	51,900	51,900	51,900	51,900	155,700	
84C	109동 5호 110동 5호 111동 5호 113동 5호 115동 1호	157	2층	5	187,863	284,137	472,000	10,000	37,2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141,600	
				5	187,863	289,137	477,000	10,000	37,700	47,700	47,700	47,700	47,700	47,700	143,100		
			4층	5	187,863	299,137	487,000	10,000	38,700	48,700	48,700	48,700	48,700	48,700	48,700	146,100	
				5	187,863	310,137	498,000	10,000	39,800	49,800	49,800	49,800	49,800	49,800	49,800	149,400	
			기존층	137	187,863	331,137	519,000	10,000	41,900	51,900	51,900	51,900	51,900	51,900	51,900	155,700	

■ 분양대금 납부계획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	771301-01-875883	코리아신텍(주)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내역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국가유공자	59A	59B	84A	84B	84C	합계	
		8	1	10	2	2		23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10	2	20	4	2	3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0	2	20	3	2	37	
	중소기업근로자	8	2	20	5	3	38	
	장애인	경기도	4	1	15	2	2	24
		인천광역시	3	1	10	2	2	18
서울특별시		3	1	10	2	2	18	
	소계	46	10	105	20	15	19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평택시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50%)	23	5	53	10	8	99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및 기타지역 (50%)	23	5	52	10	7	97	
신혼부부 특별공급		84	18	189	36	28	35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3	3	31	6	4	57	
생애최초 특별공급		88	19	199	38	29	373	
합계		277	60	629	120	91	1,177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호 및 제8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평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급)대주택을 포함한 청약(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기관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을 받은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다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서울, 인천, 경기도 및 기타지역) 지역에 거주하는 만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인 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배우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나)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인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인양을 포함)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인 가구는 청약제외로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3. 일반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는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최초 모집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기타지역(전국)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드를 무효 처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급)대주택을 포함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위 등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조치하며 관계변경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 후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저 순위자를 이정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60㎡ 초과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 ·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분	특별시, 광역시 제외지역 (평택시 및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